

빅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규제와 대응

2015. 4. 3.

구 태 언

테크앤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구 태 언 대표 변호사

-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정보보호·부정조사 팀장)
- 안전행정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대검찰청 디지털수사·특허정보원 영업비밀보호센터 등 자문변호사
-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한국정보보호학회·한국정보처리학회 이사
- 2012 정보보호대상 수상
- 2013 개인정보보호대상 수상
- 2014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법률 고문변호사 위촉
- **2014 금융감독원 금융IT감독자문위원 위촉**
- 201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위촉
- 2015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 위촉
- 2015 한국정보처리학회 이사 위촉
- **2015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현)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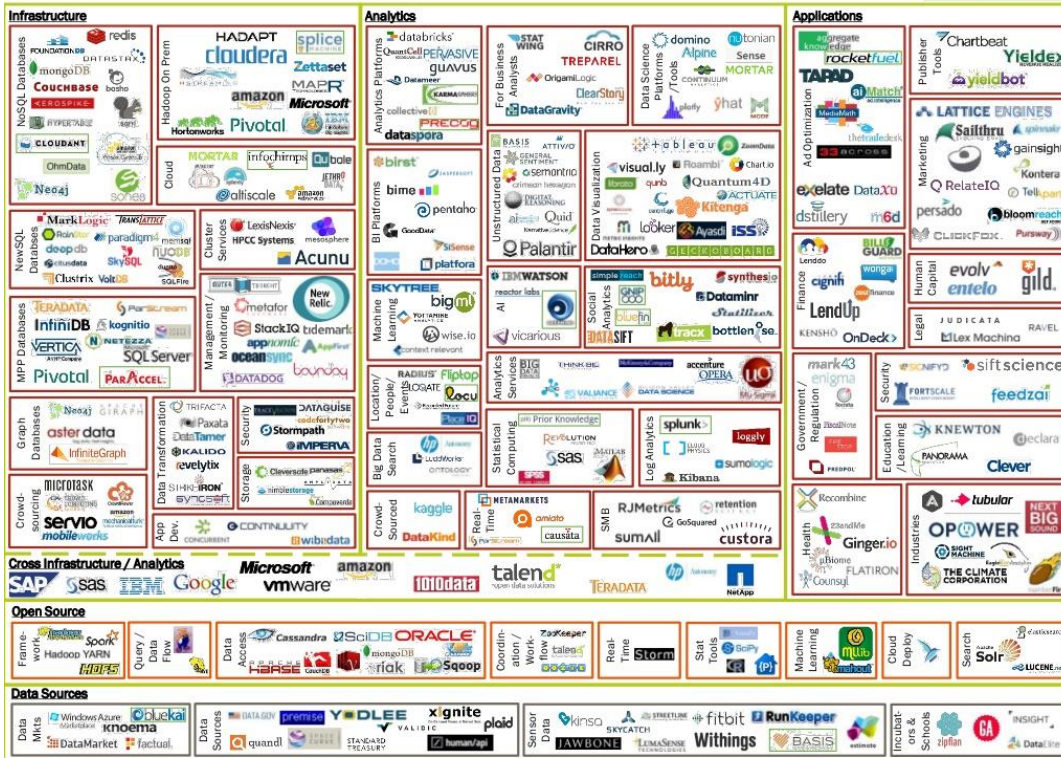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공학석사)
- Santa Clara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빅데이터 산업 글로벌 트렌드

빅데이터 업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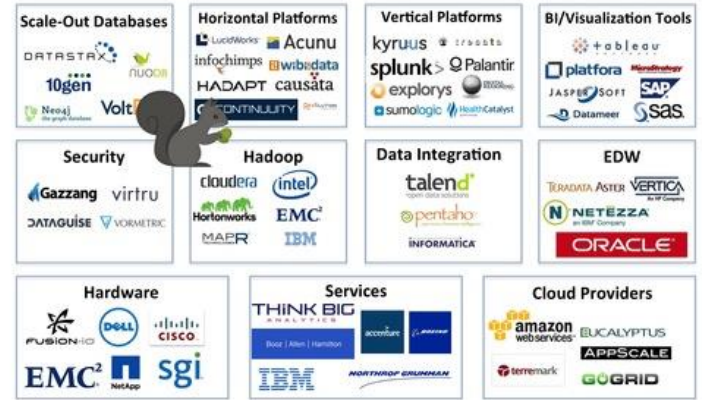
□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터 기업 급증 추세.

BIG DATA LANDSCAPE, VERSION 3.0



© Matt Turck (@mattturck), Sutan Dong (@sutindong) & FirstMark Capital (@firstmarkcap)

Big Data Ecosystem



<http://www.bigdatanews.com/profiles/blogs/big-data-eco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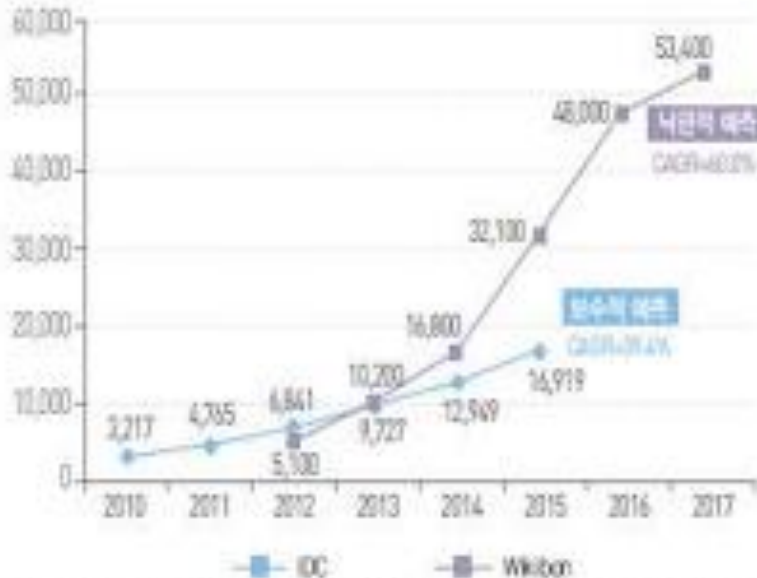
Copyright (c) Matt Turck, Sutan Dong & FirstMark Capital

빅데이터 업계 성장 추이

□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터 산업 급성장.

<세계 빅데이터 시장 규모 및 분야별 성장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연평균 성장률
서버	495	665	808	1,032	1,270	1,657	27.3%
스토리지	318	560	1,224	1,968	2,719	3,479	61.4%
네트워크	106	146	242	368	485	620	42.4%
소프트웨어	1,082	1,415	1,851	2,476	3,378	4,635	34.2%
서비스	1,236	1,979	2,721	3,883	5,099	6,538	39.5%
합계	3,217	4,765	6,841	9,727	12,949	16,919	38.4%

자료 : 한핵 외(2013), "빅데이터 산업의 현황과 전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출처: <http://grikr.tistory.com/596>

빅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기업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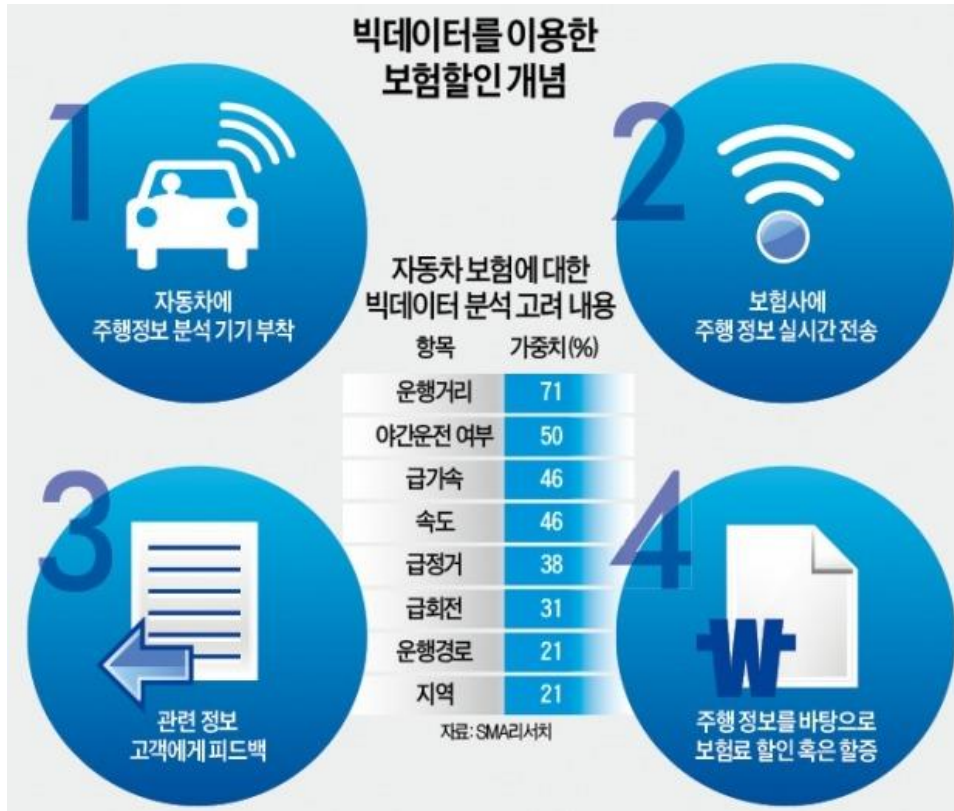
□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핀테크 기업 증가.

구 분	기업	내 용
예측	포드자동차	운전자의 이동이력 분석, 운전자의 목적지 예측, 최적 연료배분 제안
	구글	검색어 분석으로 정부보다 2주 빨리 독감 유행을 예측
	다음소프트	북카페현상, 서울시장 보궐선거 트윗점유율 분석, 트위터를 통해 본 한 국민들의 기분분석,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평판분석
	아마존	고객의 온라인상 흔적 토대 고객취향 분석, 상품구매 등의 행동 예측
고객감성 분석	기아자동차	미국 슈퍼볼 광고 후 웹상의 고객의견을 분석, 경기도중 시청자들이 자동차에 대해 나누는 대화에서 자사비중이 4%에서 9%로 상승, 고객들의 긍정적인 신뢰성도 4%에서 18%로 상승
생산성 향상	네슬러	페이스북 등에서 고객이 원하는 맛을 선택하게 하는 투표를 실시, 개발제품 수를 한정, 수요가 적은 제품의 생산비용 절감
	월마트	매주 2억개 이상의 고객거래 처리, 리테일 링크라는 재고관리시스템 도입, 점포별 재고량, 시간당/일당 판매량 등의 세세한 정보 확인 가능
개인화, 맞춤화	ING	데이터 통합으로 더욱 효율화된 맞춤화
	야후, 다음	소셜미디어 분석과 맞춤화
	프로그레시브 (보험회사)	차량내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운전행태를 보험회사에 전송 → 위험수준에 근거한 운전자 등급화 → 가입자 맞춤서비스 제공
위치정보	NTT 도코모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해 시간단위로 인구변화 추적, 네트워크 고지
의사결정	P&G	200테라바이트에 달하는 전사 빅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여 글로벌 시장상황 즉각 파악, 의사결정으로 연결
	Zara (패션기업)	전 세계 매장에서 본사로 유입되는 판매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이용해 어떤 시점에 어떤 상품이 어떤 매장에 진열되어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분석
비즈니스 창출	스파크드	네델란드에서 소에 센서를 장착하여 식사량, 운동량 파악
	온스타와 GMAC보험	원격측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동거리가 짧은 운전자에게 낮은 보험프리미엄을 부과하는 선택프로그램 개발
	구글	[무인자동차] 차량운행 정보, 실시간 교통상황, 이용자의 운행패턴 수집
	애플	[시리(Siri)] 센서데이터를 기반으로 단말이 개인비서 역할(음성검색)
	필스-K	기업이 자사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실시간 파악해 원인 분석

출처: 경기개발연구원, "빅데이터 세상 도래와 경기도 대응책", 경기도, 2013. 7. 11, 6면.

핀테크 보험사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보험할인 방법 예시

□ 금융기관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 예시.



“영국 남부에 사는 27세 여성 데니스 스미스는 작년 말 몰던 소형차를 처분하고 중형차를 샀다. 차가 커졌지만 보험료는 연 700파운드에서 연 300파운드로 떨어졌다. 비밀은 새 차 구입에 앞서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글로벌 보험사 아비바의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에 있다. 아비바는 앱을 통해 그의 차량 습관을 분석한 뒤 평소 운전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빅데이터 시대...보험업계 판도도 바꾼다”, 2015. 3. 13.

빅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산업 글로벌 트렌드와 개인정보보호 규제

최근 핀테크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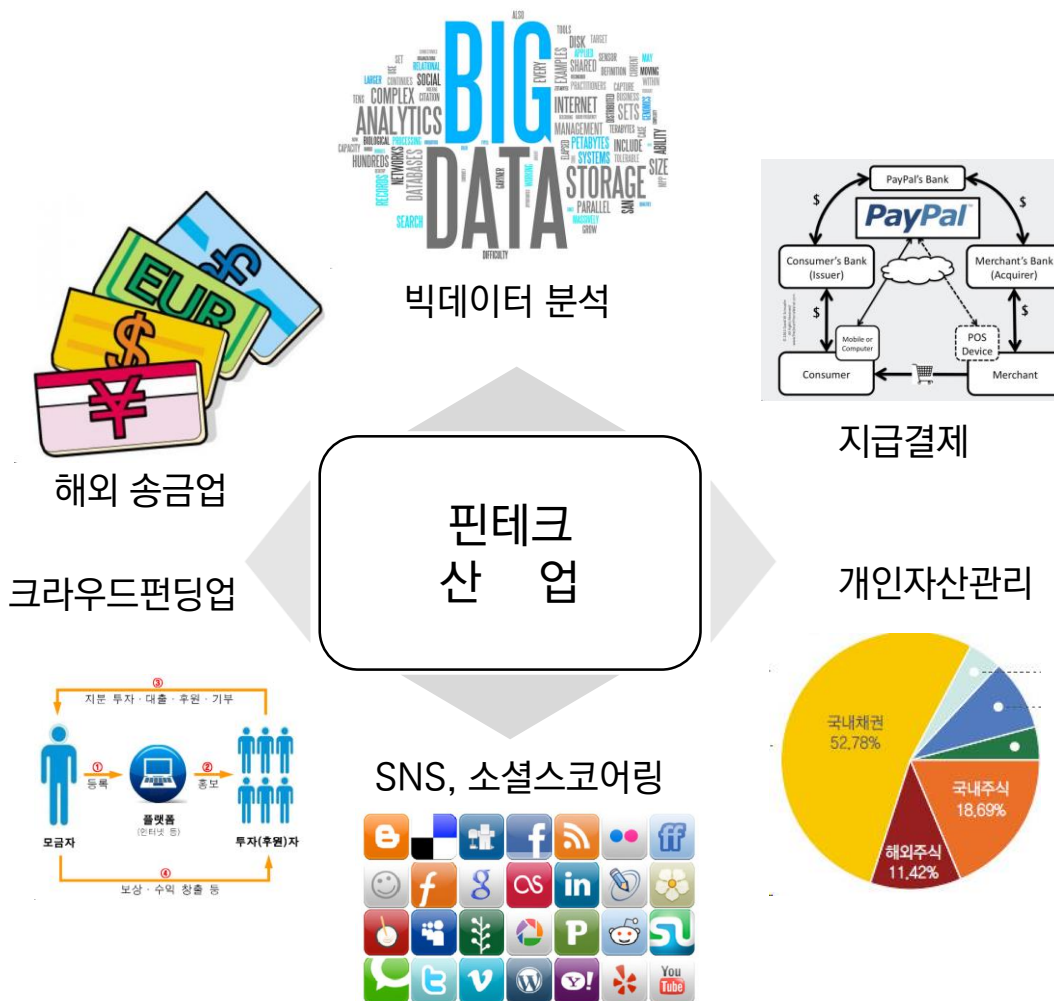
□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금융·결제 서비스 혁신을 주도

- iPhone에서 촉발된 모바일 혁명이 IT와 금융의 융합을 촉진
- 지난 5년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3배 이상 성장
 - 2008년 9.2억\$ → 2013년 29.7억 달러
- 핀테크 기업의 진출 분야 확장
 -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합종연횡 등을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의 진출분야 증대

구분		내용
금융 업무	지급결제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결제방식으로 이용이 간편하고 수수료 저렴
	송금	송금의뢰자와 수탁자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직접 연결시켜 수수료 및 시간 절감
	자산관리	온라인으로 투자 절차를 통해 수수료를 낮추고, 각종 분석시스템을 통해 고객에 최적화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
	대출중개	P2P방식으로 인터넷에서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개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자체적으로 신용 평가 수행
기술	금융데이터 수집 및 분석	개인, 기업 고객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금융 S/W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금융업무 및 서비스 관련 S/W 제공
	플랫폼	기업과 고객들이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거래 기반 제공

최근 핀테크 산업 동향

□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금융·결제 서비스 혁신을 주도



최근 핀테크 산업 동향

□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금융·결제 서비스 혁신을 주도

업종	기업	주요 내용
플랫폼	구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지급 '구글 월렛'(20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 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 허가, 소액대출업체 '렌딩클럽' 투자
	애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지급 '패스북'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탑제 NFC 방식 카드결제인 '애플페이' 미국내 서비스 서비스 개시
SNS	페이스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내 효력 발생 해외송금 기업인 '아지모' 등과 제휴 추진
	텐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결제서비스 '텐페이', MMF '리차이퉁' 출시 중국 정부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
통신서비스	버라이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T&T,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아이시스' 출시
검색	바이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전용 MMF '바이파' 출시 중국 정부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
전자상거래	알리바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리페이', MMF '위어바오' 출시 중국 정부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
	이베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페이팔' 출시 자사 선불카드인 'my Cach' 출시
	아마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서비스인 '아마존 페이먼트' 출시

금융감독원, '핀테크 동향 및 IT감독 방향'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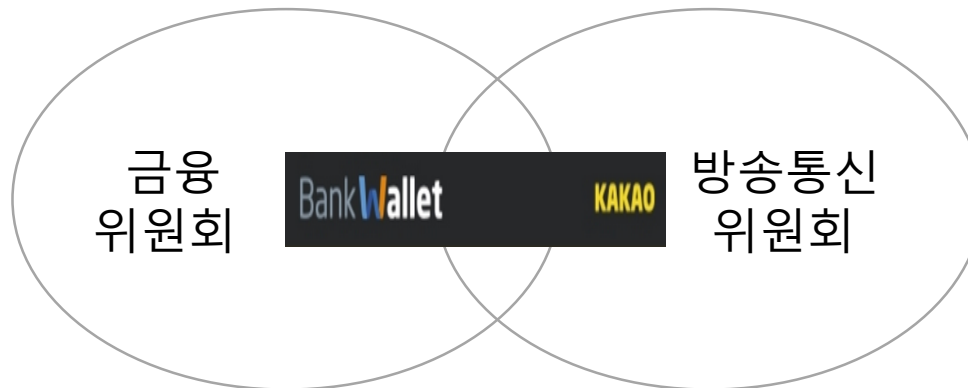
핀테크 산업의 빛과 그림자 = 금융규제와 온라인 규제의 결합

□ 대전제: 핀테크 = Finance + Tech

- ‘금융회사’는 2014 범정부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TFT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서식 등 전면 개편
 - 신용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 ‘핀테크 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금융산업 관련 규제 적용 여부 결정
 - Ex) PG사 = 전자금융거래법, 빅데이터 분석 = 정보통신망법 or 개인정보 보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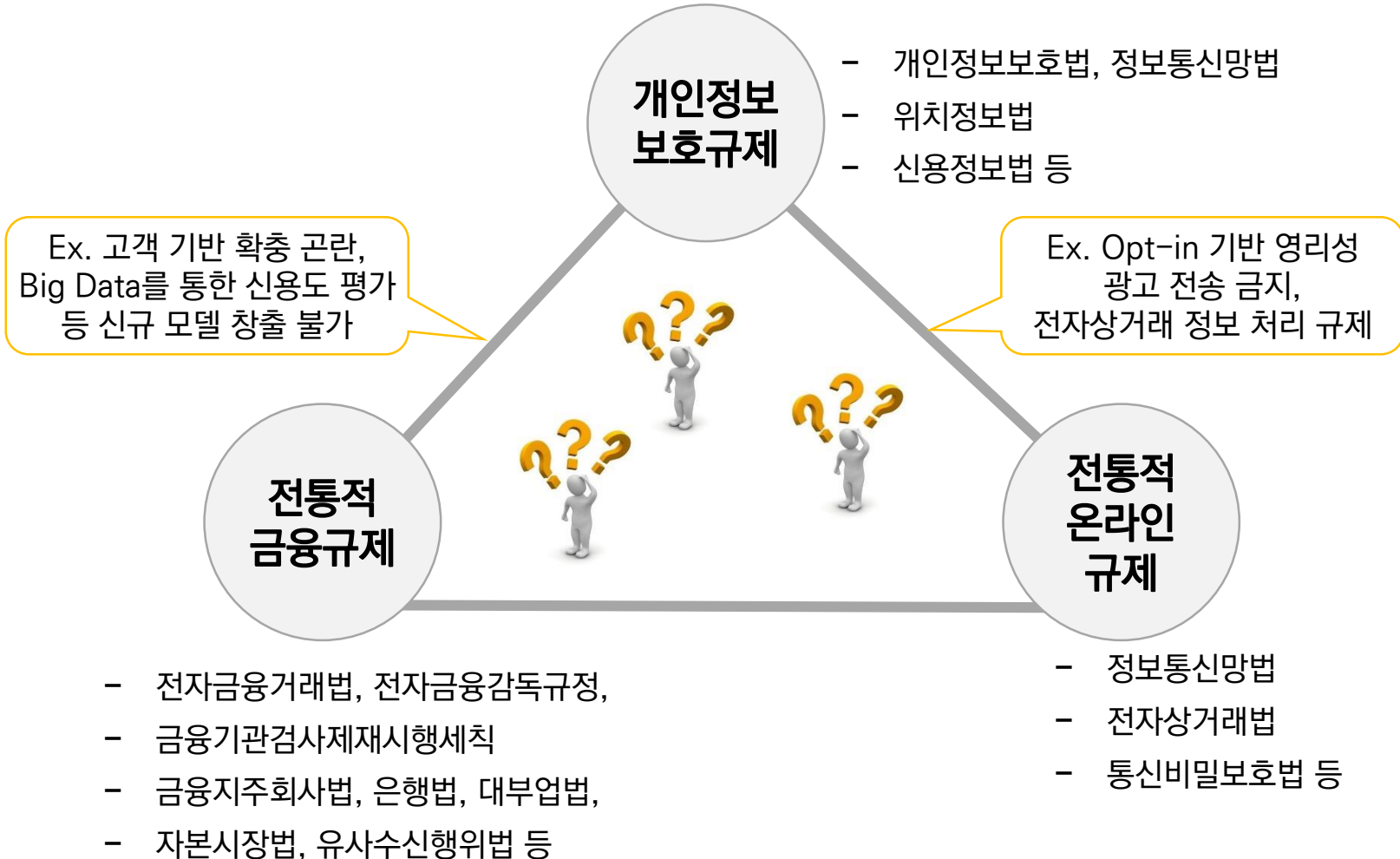
□ ‘전통적 금융규제’와 ‘IT 산업규제’가 중첩 적용되어 핀테크 산업발전 장애

- 핀테크기업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망법 적용(예, 은행월렛 for 카카오)
- 방통위 산하로? 금융위 산하로?



개인정보보호, 금융규제 및 온라인 IT의 3중 규제

□ 개인정보보호규제+금융규제+IT산업규제의 3중 장막에 둘러싸인 핀테크 기업



핀테크 산업의 핵심,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규제, 영국 사례

□ 영국 데이터 보호법상 빅데이터 활용 3대 원칙: 공정성, 목적의 제한 및 보안성

- 공정성 원칙: 고객의 동의,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정보보호, 제3자 제공 시 적법절차 준수
- 목적의 제한: 빅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데이터가 수집된 기본 목적과의 호환여부를 판단
 - 수집된 목적에 부합하는지 혹은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시험을 거쳐 판단.
- 보안성 원칙: 보안에 있어서의 최소성 원칙
 - 보안성 측면에서 빅데이터의 분석이 과잉되지 않도록 유지
 - 개인정보 보호기간: 수집목적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 파기 시 적법절차 준수

(출처: ICO, 「Big data and data protection」, 2014. 7. 28, p. 14, http://ico.org.uk/news/latest_news/2014/~media/documents/library/Data_Protection/Practical_application/big-data-and-data-protection.pdf)

핀테크 산업의 핵심,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 규제, 국내 지침

□ 방통위 빅데이터 가이드 라인

- 수집 시부터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식별화 조치(제3•4•5•10조)
- 빅데이터 처리 사실•목적 등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제4•5•9조)
- 개인정보 재식별시, 즉시 파기 및 비식별화 조치(제3•6조)
- 민감정보 및 통신비밀의 수집•이용•분석 등 처리 금지(제7•8조)
- 수집된 정보의 저장•관리 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시행(제3조 제②항)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빅데이터, 수집 시부터 철저히 비식별화 조치해야”, 2014. 12. 23.자 보도자료. <http://www.kcc.go.kr/user.do?mode=view&page=A05030000&dc=K05030000&boardId=1113&cp=2&boardSeq=40287>)

규제로 인한 핀테크 창조기업의 IP 생태계 미흡

특허괴물의 PCT출원으로 국내시장 성숙 후 공격 혹은 해외시장 진출 시 공격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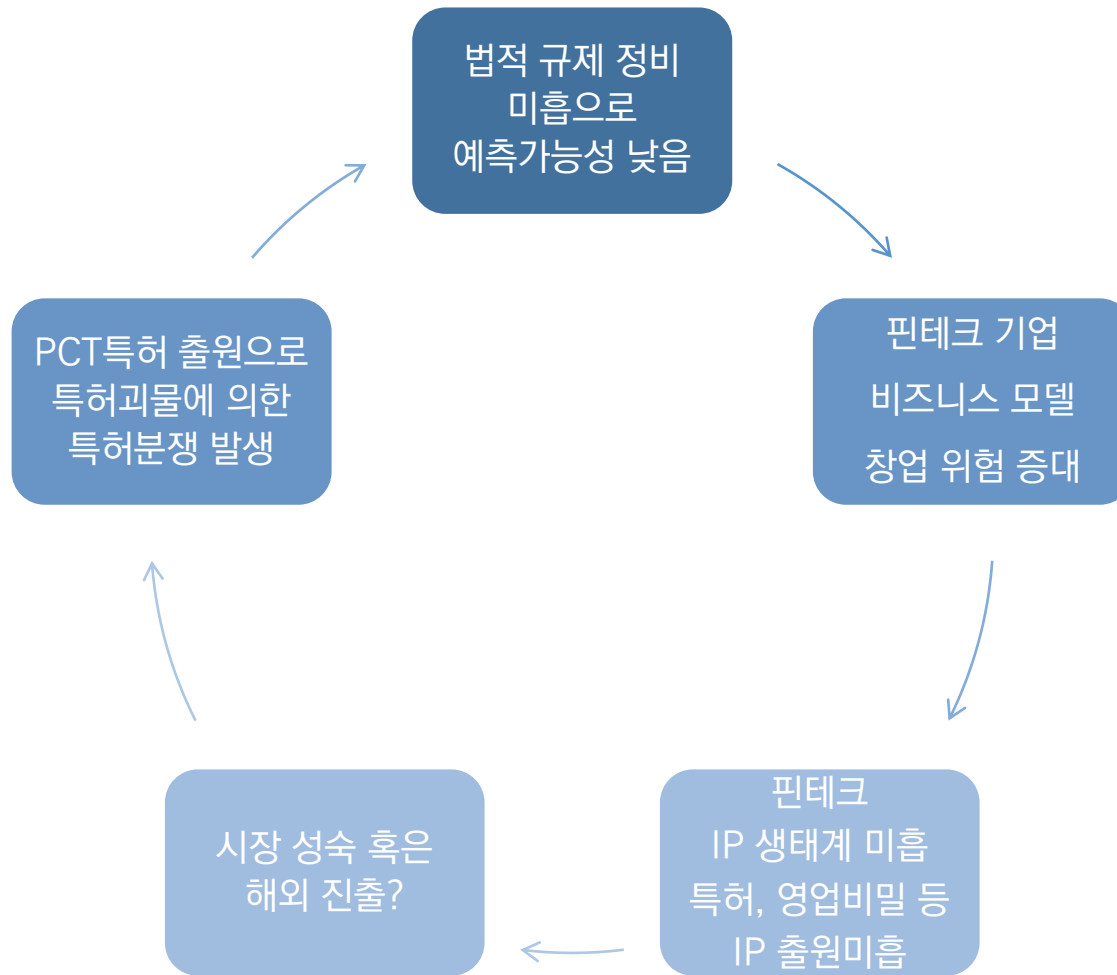
미국의 특허방어회사와 특허방어연합 현황

RPX (Rational Patent) 특허방어회사, 특허소송 위험 해소	회사명 상업목적	AST (Allied Security Trust) 특허방어연합·특허료, 소송비용 절감
2008년3월	설립시기	2008년8월
회사규모에 따라 5만~50만달러 가량이 낮을수록 높아짐	연회비	없음, 운영비50만달러 이하 부담
미국 특허 344개, 미국 특허 사용권 270개 이상 등	보유특허	IT, 인터넷, 반도체, 소프트웨어, 가전제품, 케이블 TV 분야 특허
회사가 독자적으로 판단 회원들은 처권 제시할 수 없음	특허구입	회원들간 합작
삼성, LG, 휴렛패커드, 노키아, IBM, 파나소닉, 필립스, 소니 등 14개	가입회원	모토로라, 휴렛패커드, 시스코, 구글 등 15개, 30~40개로 확대 계획
인합	특허소송	인합

출처: 서울경제, “[진화하는 특허괴물 기술한국이 흔들린다] <4>특허펀드로 '기술한국' 지키자”, 2009. 9. 23.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090923171712275>

낮은 규제완화, 핀테크 R&D 경험 부족, 특허 풀 형성 미흡, 해외 진출시 특허분쟁 딜미



□글로벌 핀테크 특허 현황

- 2013년 현재 277,835건 등록
 - 미국 133, 593건 (약 48%)
 - 미국의 BM특허 중 705류가 영업방법 으로 간주되는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핀테크 관련 소프트웨어 발명: “데이터 처리: 금융, 영업 관행, 관리 혹은 비용/가격 결정”
 - 미국 이외 144,242건(약 52%)

출처: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 Patent Statistics, Calendar Years 1963–2013” USPTO Electronic Information Products Division/Patent Technology Monitoring Team, 2014.

□ 2013년 현재 미국 핀테크 특허(705류) 현황

- IBM 23,826건 등록
- Bank of America 531건 등록
- JP Morgan Chase Bank 324건 등록
- Goldman, Sachs 158건
-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118건
- Morgan Stanley 103건

출처: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 Patent Statistics, Calendar Years 1963–2013” USPTO Electronic Information Products Division/Patent Technology Monitoring Team,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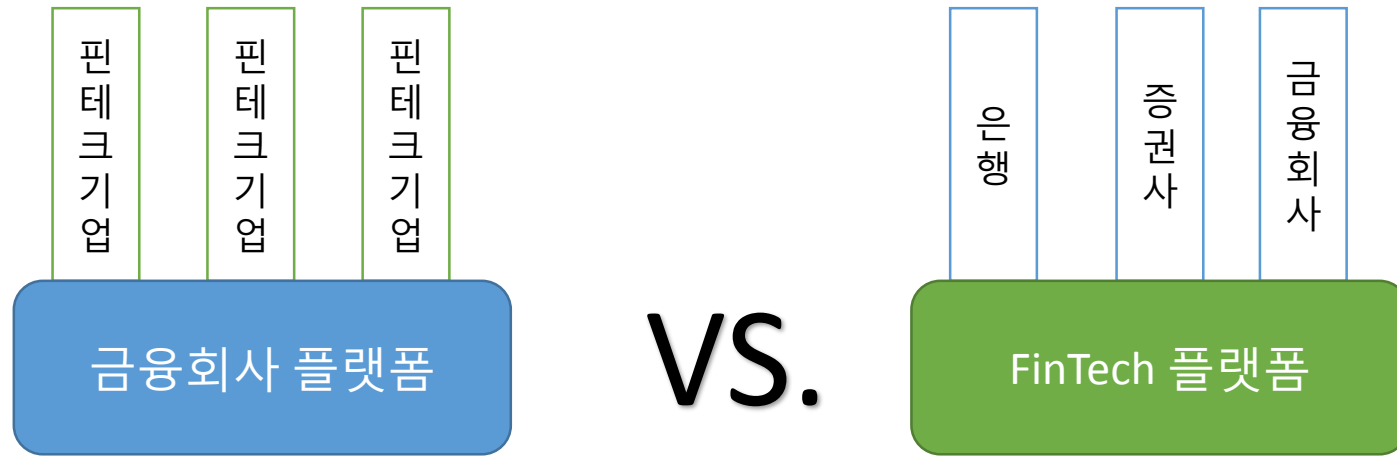
<u>Company</u>	<u>2009</u>	<u>2010</u>	<u>2011</u>	<u>2012</u>	<u>2013</u>
Bank of America	15	26	71	163	256
JPMorgan Chase Bank	37	71	55	64	97
Goldman, Sachs	11	21	37	37	52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3	13	20	29	53
Morgan Stanley	11	45	20	14	13

출처: Wayne M. Kennard, “IP Strategies in a Competitive FinTech Marketplace”, 17 FINTECH LAW REPORT 4, Jul./Aug. 2014, p. 6.

핀테크 서비스의 불명확한 법적 성격과 기업의 법적지위의 모호성 해소

- 금융위가 법령 개정을 통해 IT 기업들을 ‘금융회사’규제를 적용한다면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제산업으로 변모될 가능성

핀테크 기업을 바라보는 대립하는 시각들



- 핀테크 기업을 금융회사 또는 그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예상하지 못한 규제 부과

- 금융법령을 적용받는 금융회사와 정보통신망법 등 비금융법령을 적용받는 핀테크 기업간의 규제 격차로 인한 협업 장애 발생 가능

법적 제한 요소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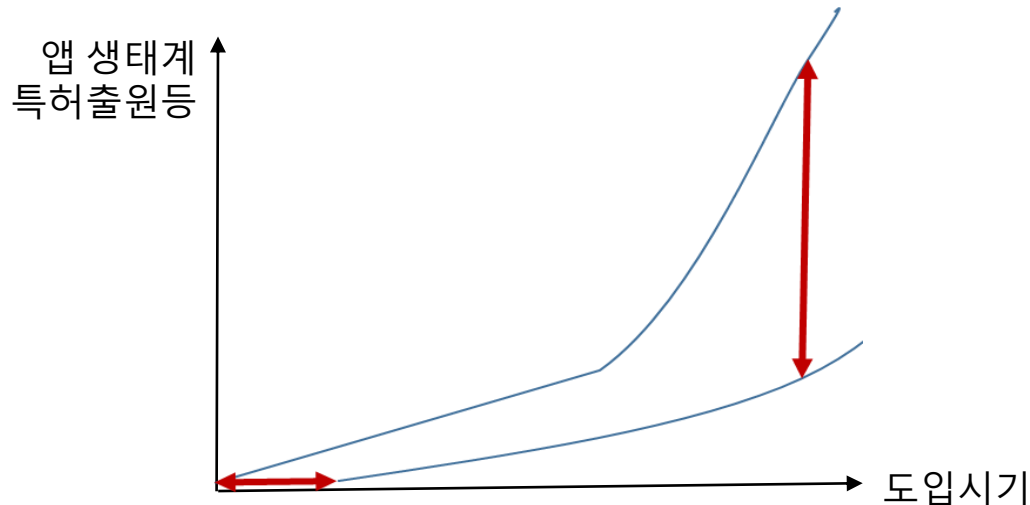
□ 법령 개정, 적극적 정책 기조 유지 및 비조치의견 제도의 적극적 활용

-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이용자/금융기관/핀테크기업 모두 Loser가 되는 상황 → **패러다임을 바꿔야**
 - 개별적 · 구체적 · 사전적 동의가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를 해 달라!
 - Win-Win 시스템의 3대 원칙 (광범위한 개인정보정의 수정은 별론)



□ 핀테크 법제 신속 정비 및 일관된 정책 추진 필요

- 2010. 11. 30. 아이폰 국내 도입, 글로벌보다 2년 반 가량 지체
 - 국내 앱 생태계 구축 미비로 글로벌 기업들이 서비스 장악
 - 저작권·특허 장벽에 둘러 쌓이는 결과 초래
- 영국, 미국, 중국에 비해 핀테크 도입 논의가 늦은 상황
 -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아래 막강한 자금력, 운영 노하우, 리스크 관리 능력 보유
 - 규제 철폐와 동시에 오히려 해외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국내 시장 잠식 가능
- 핀테크 관련 법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정부의 일관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



빅 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산업과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 저작권법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보호

-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보호기간: 5년, 그러나 업데이트 되면 다시 5년간 존속.
- 미국은 전통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보호에 부정적.
 - ✓ 진단이나 치료기술을 DB화 하고, 이를 보호할 경우 일반인의 치료, 진단에 이를 사용할 수 없어서 독점 배타적인 소유를 허용하지 않음.

□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빅 데이터의 보호

-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타인의 노력한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등 상당한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와 같이 타인의 명성에 기대어 부정경쟁을 하는 경우에만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차목의 일반 부정경쟁행위가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임.

빅 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기업의 영업방법(BM) 특허

- 핀테크 기업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보험액 할증 방법 등은 영업방법(Business Method) 특허로 보호



출처:

http://www.kipo.go.kr/kpo/user.tdf;jsessionid=9863ca6b30d5768ddf80e77f41b98babd12a0e488245.e34RahyTbxmRb40LaxyPahaRa3aRe0?a=user.html.HtmlApp&c=8060&catmenu=m06_02_10

빅 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기업의 영업방법(BM) 특허 심사방법

• 영업방법 특허 심사방법

- ✓ 효율적인 신용평가(혹은 보험액 할증)를 위하여 대출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영업방법 상의 아이디어와 이를 인터넷상에서 구현하는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 대출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영업방법 상의 아이디어는 본 발명의 특징적인 방법으로 주장되고 있음.
- ✓ 이 경우 그 영업방법상의 특징을 인정하여야 하며 선행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그 영업방법에 대한 본원의 출원 이전에 공개된 자료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진보성이 없다고 거절할 수 없음.

출처:

http://www.kipo.go.kr/kpo/user.tdf;jsessionid=9863ca6b30d5768ddf80e77f41b98babd12a0e488245.e34RahyTbxmRb40LaxyPahaRa3aRe0?a=user.html.HtmlApp&c=8060&catmenu=m06_02_10

창조경제, 핀테크 산업의 IP 생태계 조성으로 확고한 입지 마련해야

21년간 금융기관별 일반 특허출원 건수 추이, 핀테크 특허 수십개 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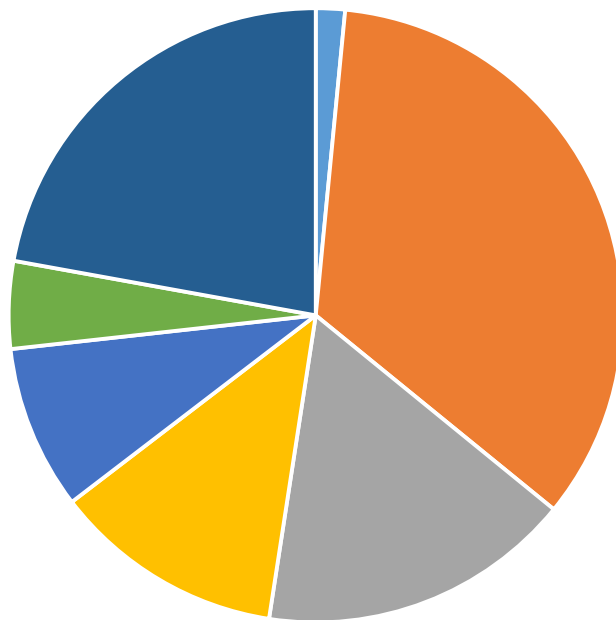
출처: 전자신문, “특허괴물 새 먹잇감 은행·카드·증권·보험...핀테크 금융특허 경쟁력·낙제”, 2015. 1. 20. (전자신문, 웹스 공동 조사, 금융감독원 통계기초)

*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위하여 제공 국내 은행·보험사·카드사별 특허출원 건수
 * 금융사 간 인수합병이 존재할 때 특허출원건수를 병합해 표기
 * 1994년 7월 1일~2014년 12월 31일 기간 공개, 특허청 문헌에 한하여 검색함
 * 심사완료의 차이를 제외하는 공개, 등록요건 충족여부가 최종 검색결과임
 * 또는 모든 출원한 한 건이라도 존재하는 신청건수가 기록되어, 출원만 없는 사례는 기재하지 않음



핀테크 IP 주도권, IT업체로 기울어

모바일 결제 특허출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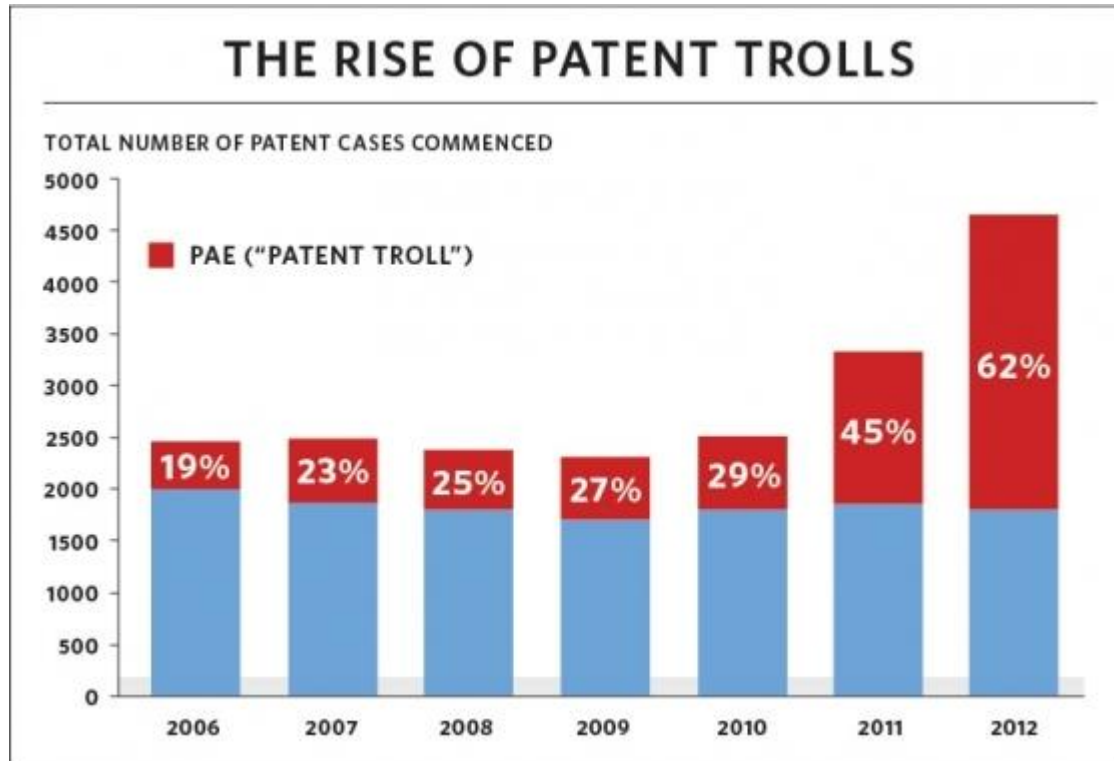
■ 카드사 ■ IT서비스기업 ■ PG사 ■ 제조업체 ■ 통신사 ■ 은행 ■ 개인

카드사	1%(63건)
IT서비스기업	33%(1411)
PG사	16%(680)
제조업체	12%(500건)
통신사	8%(355건)
은행	4%(189건)
개인	21%(910건)

출처: 디지털타임스, "핀테크 주도권 IT업체로 기울어진다 -1411건 특허출원 33%로 가장 많아... 은행·카드사는 각각 4%·1% 불과", 2015. 3. 4.
(특허청 통계기초)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030502100558739002

특허괴물에 의한 소송 급증 추세



출처: White House Blog

특허괴물(Patent Trolls): 비실시특허기업(NPE)으로 불리기도 하며, 기업으로부터 유망 특허권만 구입하여, 침해자를 상대로 소송제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집단을 부르는 명칭.

핀테크 기업의 IP, 특허분쟁 대응전략

□ 특허 출원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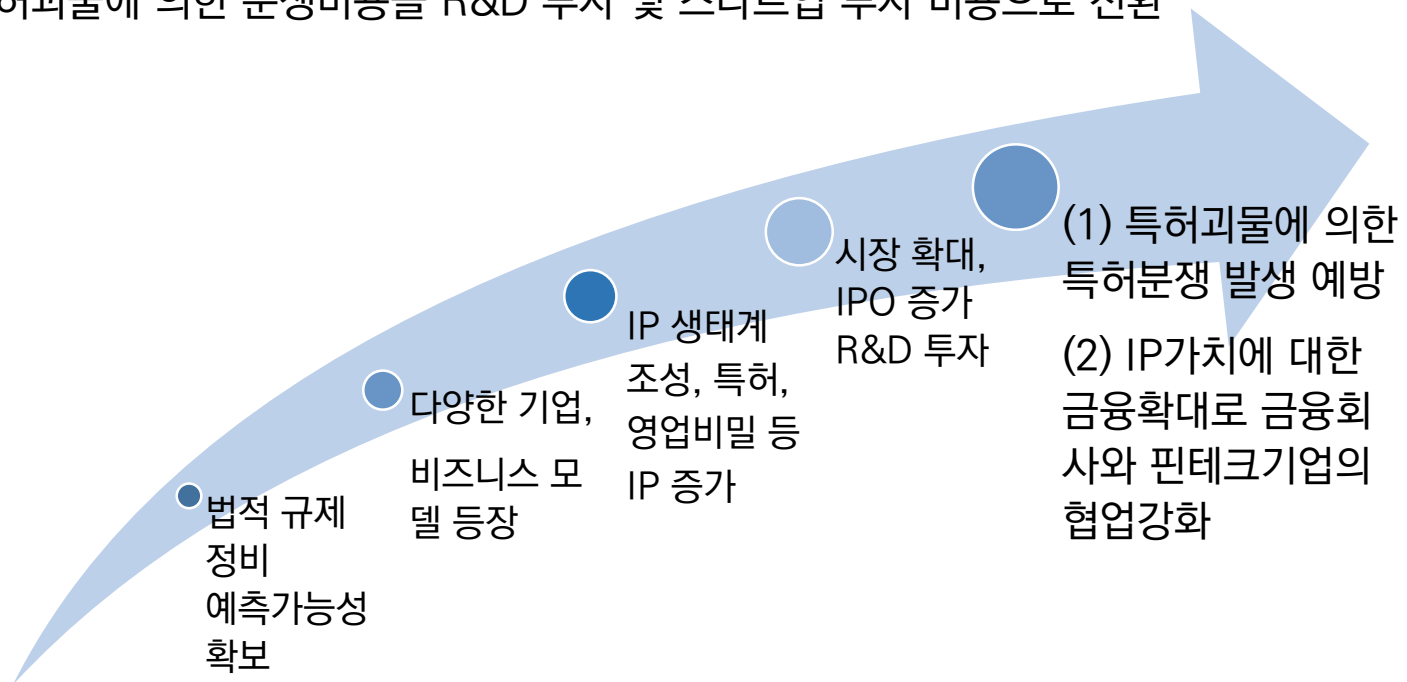
- **자사 서비스 및 상품에 관한 글로벌 특허 트렌드 파악**
 -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핀테크 특허지도 구축필요
- **특허괴물 등의 무분별한 침해소송에 대해 단호한 대응**
 - 경고장에 위촉되기 보다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 핀테크 기업에 대한 국가보조 대응 서비스 구축 필요
- **핀테크 협업을 위한 협상단계에서 비밀유지협약(NDA) 및 자사 직원 접촉 금지 의무
약정 체결에 주의해야**
 - 경영판단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 판단(기업인수나 기술매수보다 기술탈취에 관심있는지
여부에 주의)
- **대기업의 경우 자체 개발이나 특허출원보다 국내·외 유망기업의 특허 매입 혹은 기업
인수가 유리**
 - 삼성전자가 핀테크 특허 3건 가진 루프페이에 추정치 1억 달러 이상 투입한 이유

(출처: 특허청, 『특허분쟁사례에서 배우는 효과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10가지 전략』, 2004. 7.)

규제 및 특허 분쟁비용 감소를 통한 R&D 비용 및 창업기업 투자증대 선순환 필요

□ 핀테크 기업들의 법적 지위 / 적용 법령 명확화

- 기업들의 법적 지위 및 적용 법령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측가능성' 담보
- 예측가능성에 기반한 핀테크 기업들의 '법적 리스크' 감소 => 기업가치 증대
- 기업가치 증대 및 IP 담보대출증대로 인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협업 강화
- 특허괴물에 의한 분쟁비용을 R&D 투자 및 스타트업 투자 비용으로 전환



감사합니다

